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. 12. 19 선고 2023가단20067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3. 11. 21.

판 결 선 고 2023. 12. 19.

주 문

1.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 2020. 1. 22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3,299,9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,299,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34089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. 7. 14. ‘E는 원고에게 7,885,790원 및 그중 2,325,986원에 대하여 2016. 10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.6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의 소유자였고, F이 사망함에 따라 F의 자녀들인 G, H, E, I, 피고는 2020. 1. 22.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(이하 ‘이 사건 약정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으며, 피고는 2022. 11. 16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. 22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’라고 한다)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E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,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라.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은 2023. 2. 23. 기준으로 함께 13,597,964원이다.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해남군,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1)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

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).

2)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, E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5 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전해준 것이므로, 이는 E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.

3) 피고는, 피고만이 F을 부양하며 살아왔는바, 피고가 부모님의 분묘 관리 및 제사 등을 책임지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이므로,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,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

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상당액이 합계 42,146,470원인 사실, F의 상속채무가 25,646,97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42,146,470원에서 상속채무인 25,646,9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,499,500원(=42,146,470원-25,646,970원) 중 E의 상속지분 1/5 상당액인 3,299,900원(=16,499,500원×1/5)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범위에 해당한다.

따라서 피고와 E 사이에 2020. 1. 22.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3,299,90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,299,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경준

별지